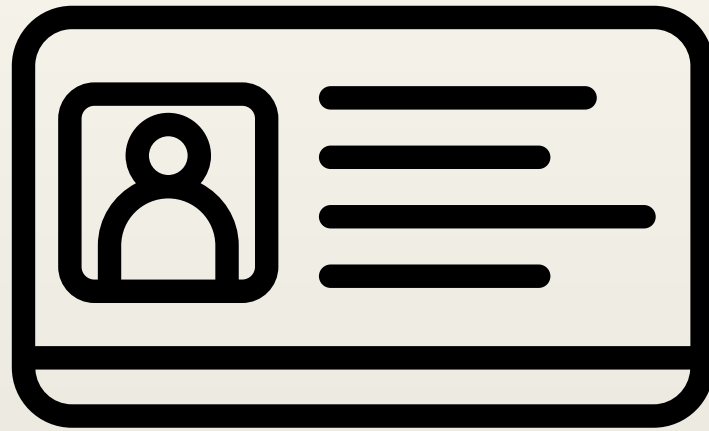


**주민신분증을 세금코드로 사용하는  
경우: 관련 규정 및 절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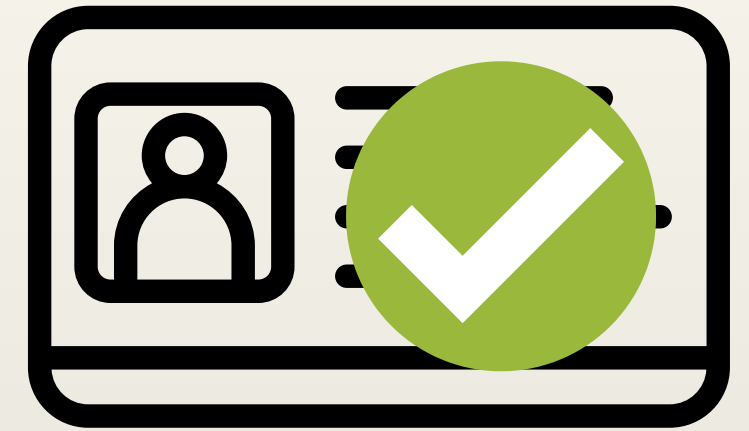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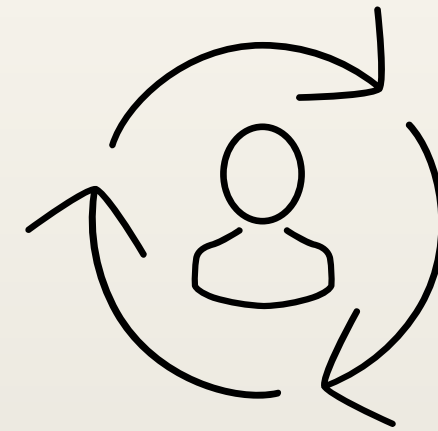
**재정부 시행규칙 제86/2024/TT-BTC호 및 공문  
제3422/CT-NVT호에 따른 적용 안내**



## 적용 원칙: 주민신분증 이 자동으로 세금코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



주민신분증



세금 등록 신청서

국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정보  
일치 확인

주민신분증상의 개인식  
별번호가 세금코드를  
대체

### ❌ 일반적인 오해

주민신분증이 있으면 자동으로  
세금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생각  
하는 경우

✅ 개인은 여전히 세금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
개인식별정보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된 경우에  
만 세금코드를 대체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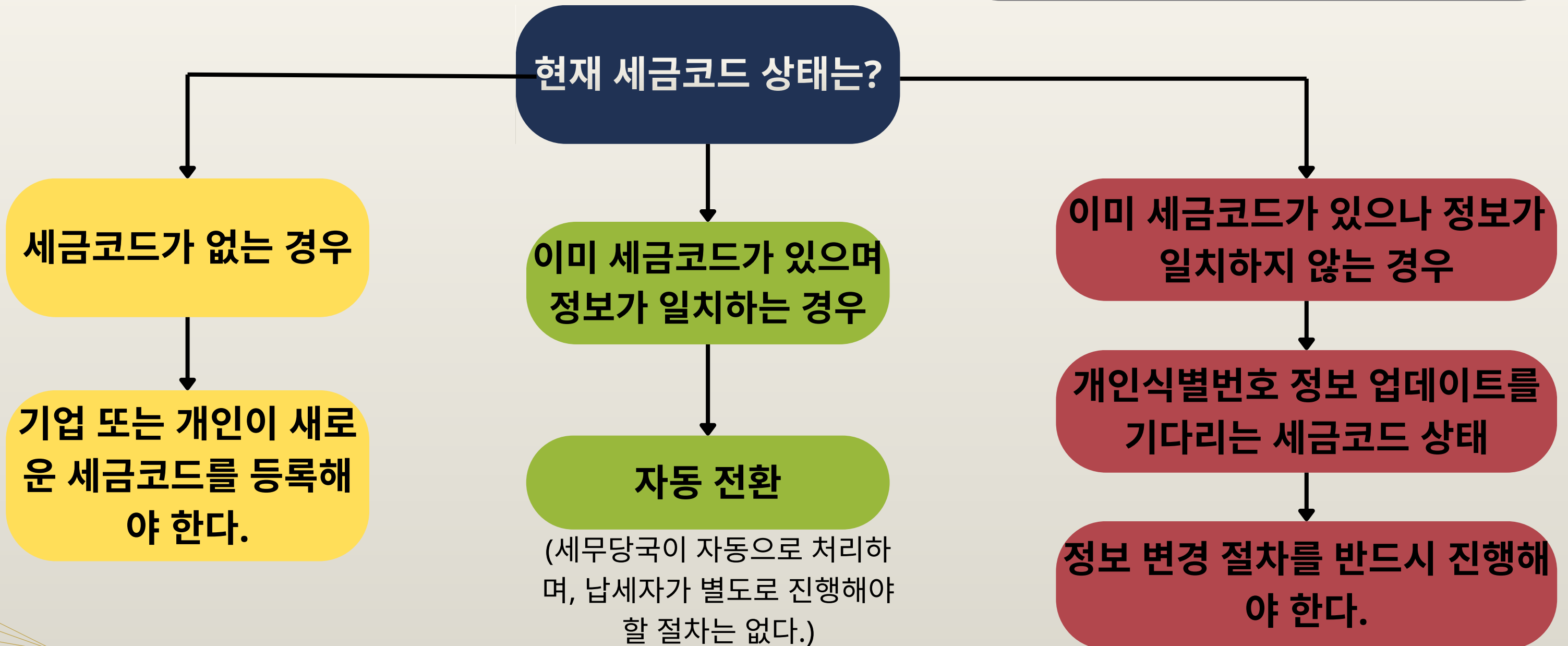
### 📋 법적 근거

재정부 시행규칙 제86/2024/TT-BTC호 제39조 제2항 및 제3  
항에 따른다.  
고용주는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아직 세금코드를 보유하고  
있지 않은 경우, 세금 원천징수 및 세무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 
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새로운 세금코드 등록 절차를 완  
료할 책임이 있다.

# 법적 상태 판단도

##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

**중요 시행 시점:**  
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증빙서류 및  
세금계산서에서 세금코드 대신 개인식  
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.



# 절차 매트릭스: “정보 업데이트 대기” 상태 처리

|             | 1. 개인이 직접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기업에 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개인사업자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류          | 08-MST 서식 또는 20-DK-TCT 서식                  | 05-DK-TH-TCT 서식 또는 20-DK-TH-TCT 서식 | 읍·면·동 인민위원회에서 정보 변경 등록 |
| 전자 방식 (권장)  | eTax Mobile 또는 공공서비스 포털 이용 (전자세무 계정 등록 필요) | 행정절차 처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         | 원스톱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동   |
| 방문·우편 제출 방식 | 행정서비스센터 또는 세무서에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할 세무기관에 서면 서류 직접 제출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|

# 예외 처리: 개인이 여러 개의 세금코드를 보유한 경우



## 핵심 원칙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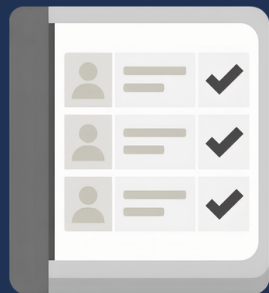
세무관리시스템은 여러 개의 세금코드를 자동으로 검토·통합하고, 국가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동기화한다.

## 법적 효과:

- 납세자는 세금코드를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.
- 통합 절차가 완료되면 시민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식별번호가 유일한 세금코드로 사용된다.

**유의사항:** (예외 중의 예외) 조회 결과에 “정보 업데이트 대기 상태의 세금코드”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반드시 관련 정보 변경 및 업데이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

# 기업을 위한 행동 권장 요약



## 1. 신규 등록

회사는 반드시 새로운 세금코드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. 직원 또는 부양가족이 과거에 세금코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경우,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.



## 2. 데이터 정비 및 일치화

회사는 전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일치화해야 한다. 구체적으로 2025년 7월 1일 이전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세금코드 상태를 확인하고 정보 업데이트 대기 상태인 경우 즉시 분류해야 한다.



## 3. 절차 간소화

정부 온라인 민원 포털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.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,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위임장과 전자 통합 신고를 (05-DK-TH-TCT 서식)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.



**HANKUK**  
Law Firm

**HANKUK LAWFIRM**

WEBSITE:

<https://hankuklawfirm.com/vi/>

KAKAOTALK:

**Hankuklawfirm**

PHONE:

**0942 339 063**